

국제교류교육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대학과의 교류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원예술대학교 부속 국제교류교육원(이하 “국제교류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

제2장 기능 및 조직

제2조(기능) 국제교류교육원은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학생 및 교원 등의 교환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문의 국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5.1.13>

1. 해외어학연수에 관한 사항
2. 재학생의 외국어 학습 및 교육
3. 외부기관의 외국어 위탁교육
4. 재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 외국어 능력 평가
5. 외국어교사 양성
6. 외국어 교사의 연수 및 재교육
7. 언어 교육자료 수집 및 편찬
8.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 언어 및 문화연수
9. 외국대학 및 기관 등과의 교류 및 상호협력

제3조(원장) <개정 2015.1.13.><삭제 2019.1.23.>

- ① 국제교류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류교육원의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신설 2019.1.23.><개정 2019.8.16>
- ② 국제교류교육원장은 총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신설 2019.1.23.><개정 2019.8.16>
- ③ 국제교류교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9.1.23.><개정 2019.8.16>

제4조(조직) ① 국제교류교육원에는 국제교류센터와 국제교육센터를 둔다.

- ②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국제교류교육원에는 원장의 명을 받아 각 센터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책임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8.16>
- ④ 국제교육센터에는 겸임교수, 객원교수, 시간강사를 두어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5조(각 센터)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교류센터는 외국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국제교육센터는 해외어학연수에 관한 제반 사항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 언어와 문화 연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제교류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원장, 센터장, 교학지원처장, 기획조정처장, 행정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다른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09.25.>

<개정 2019.1.23.>

③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교류교육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교육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교육원의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학생의 교환대상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6. 교환학생의 지도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 언어와 문화 연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제교류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국제학술교류

제9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국제학술교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가 외국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상호 호혜 정신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교환학생”이라 함은 협정에 따라 파견되는 학생을 말한다.

제10조(협정체결 대상기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2.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국가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3. 지역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4. 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제11조(협정체결 절차) ① 외국대학과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정추진계획서를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때에는 당해부서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협정체결은 당해 부서의 장이 국제교류교육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통신 수단인 이용등 기타 방식에 의하여 서명할 수 있다.

제12조(체결권자) ① 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부서에서 동시에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교류교육원 주관 하에 총장명의로 체결한다.

제13조(보고) 협정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국제교류교육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국제교류교육원은 매 학년도 말에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서류보관) 협정문등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국제교류센터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5장 외국인학생

제15조(정의) 국적법 제2조의 각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민으로서 본교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를 외국인 학생이라 칭한다.

제16조(전형) 외국인학생에 대하여는 한국어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형을 행한다.

제17조(자매결연학교 학생) 자매결연학교로부터 추천된 학생은 본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자매결연 협정에 의한다.

제18조(특전) 외국인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및 생활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장 교환 및 자비학생

제19조(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원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두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자비학생은 학업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신체건강한 자(학교지정병원의 신체검사 소견서 첨부)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20조(교환학생의수) 호혜원칙에 따른다.

제21조(신청절차)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춘 후 소속 대학의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때마다 따로 정한다.

제22조(선발절차 등) ① 해당학과(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본교생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여비 등 일체의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의무)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본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기간은 휴학할 수 없다.

제24조(등록금 및 경비) ① 매 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학에 필요한 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교과과정 이수)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전공 및 부전공 분야 교과목의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과목이수에 관한 사항은 수학계획서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출국허가) 출국허가는 국제교육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제27조(귀국보고) 수학허가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 후 7일 이내에 소속 학과(부)장에게 소정의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부)장은 이를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학점인정 건의서) ① 외국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나 과정이수 확인서(수료증)를 귀국 후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학과(부)장은 학점인정 건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제교류교육원은 소속 학과(부)에서 제출한 학점인정 건의서를 검토한 후 교학지원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학점의 인정) 해외 자매결연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

1.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17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교류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직전학기 학사경고 자는 14학점을 인정한다.
2. 외국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학년 해당학기에 본교에 설강된 교양과정, 계열기초과정, 전공과정으로 대체인정하며, 성적은 외국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점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에서 급수(등급)별로 성적평가를 달리 한 경우는 소속 학부(과)에서 결정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3.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 기준은 주별 시수에 근거(1주 1시간 1학점 기준) 해야

하며 학생이 소속한 학부장은 소속 학부의 교수 과반수이상인 참석자 회의에서 전원이 대체인정학점에 동의한 회의록을 학점인정건의서와 함께 국제교류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체과목은 학생이 수강 신청한 과목을 우선으로 인정하며 성적표에 '해외파견'이라 표기한다.

제30조(학생지도 및 관리) ①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본교의 학칙 또는 교류대학의 학칙에 의거 처리한다.

② 외국인 교환학생의 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제교류교육원에서 담당한다.

③ 국제교류교육원은 교환학생 희망자에게 학생교류에 관한 안내, 상담 및 자료를 제공한다.

제7장 어학연수생

제31조(교육과정) 어학연수생의 교육과정은 외국어강좌, 한국어강좌, 한국어교사양성과정 등으로 구성하며, 그 외에 어학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교육대상) 어학연수과정의 정규어학강좌와 한국어강좌는 본교 재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의 교육대상은 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3조(수업관리) ① 어학연수생의 승급은 전체 수업의 80%이상을 출석하고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일 경우에 다음 단계로 승급할 수 있다.

② 출석률이 80%이하인 어학연수생은 비자연장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어학연수과정은 지각 및 조퇴가 3회가 될 경우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어학연수생의 성적은 출석, 참여도, 시험의 결과로 산출한다.

⑤ 성적 미달로 인해 유급이 2회 이상이고 수업태도가 불량하여 다른 학생의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 될 경우 국제교육센터장 재량으로 다음 학기의 등록을 불허 할 수 있다.

제34조(어학연수생 선발 등) 어학연수생 선발 등 어학연수 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교류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준용규정

제35조(회계연도) 이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예원예술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9.1.23.>

제36조(예산편성) <삭제 2019.1.23.>

① 원장은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학년도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1.23.>

② 학기별 입학 인원의 예측이 불가하거나 변동이 클 경우 입학 기수별로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할 수 있다.<신설 2019.1.23.>

③ 총장은 교육원 예산과 결산을 본교 예산·결산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

제37조(수입원) 이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조신설 2019.1.23.>

1. 수강료 및 등록금
2. 예원예술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
4. 기부금 및 기타 수입

제38조(회계관리) 이 교육원의 회계는 독립하여 운영하되 행정지원처에서 담당하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본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조신설 2019.1.23.>

제39조(보칙 및 준용)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세부내용 및 행정처리 방법, 과정별 운영 규칙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교육원 내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사항은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조신설 2019.1.23.>

부 칙(2007. 3. 1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에 시행되었던 어학원 운영규정은 본 규정으로 대체한다.

부 칙(2008. 1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